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11. 9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11. 1.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9. 11. 1.
- 다. 상정일자 : 제6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9. 11. 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채진욱 청소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동 조례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이 모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하고,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일부를 보완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자제 사업장에서 실천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종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명령을 위한 사전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보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자와 음식점, 백화점, 목욕탕 등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이 모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4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절차 등을 보완정비함.
- 음식점,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실천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하는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하여 사전에 의견진술 등 절차를 보완 정비함.

3.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등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동일 규정이 있으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일부 보완하며,
안 제8조에서 음식점·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품 사용자제 등 실천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종·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조치명령을 위한 사전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1999.2.8. 법률 제5863호)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우리구 조례를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음식점이나 백화점에서 현재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 답변요지(채진욱 청소행정과장) : 1회용컵 사용금지가 금년 5월부터 시행되어 적발시 3개월간 이행명령을 한후 이행명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는지?
- 답변요지(채진욱 청소행정과장) : 현재 과태료 부과실적 없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어떻게 쓰레기통 줄인다는 것인지?
- 답변요지(채진욱 청소행정과장) : 재활용률 촉진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임.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위반업소는 많은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고 법이 무용지물이 아닌지 지금까지 실적은?
- 답변요지(채진욱 청소행정과장) :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고 6000여개 업소를 점검하여 13개업소에 이행명령토록 조치함.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빨리 정착되도록 하겠음.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음식점, 백화점, 목욕탕외 어느대상 업소가 있고 해당업소는 몇 개 업소인지?
- 답변요지(채진욱 청소행정과장) : 숙박업, 집단급식소, 대형도매센터, 쇼핑센터, 도시락제조업 등이며 해당업소수는 6000여개임.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조례 개정후 주민이나 업소가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할것.
- 답변요지(채진욱 청소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음.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목욕탕 칫솔, 면도기 등 1회용품이 일반쓰레기에 섞여서 배출되고 있는데 충분한 권고로 스스로 지킬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하겠음.
- 답변요지(채진욱 청소행정과장) : 사업장은 안내문을 발송해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 호응하지 않아서 성과가 없음..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목욕탕에서 1회용품 사용이 필요한데 국민에 편리한 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 답변요지(채진욱 청소행정과장) : 1회용품 사용은 못하나 목욕탕에 한해 1회용품 유상판매는 가능함.
- 질의요지(권오범 위원) :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개념이 다름. 유상판매 함으로써 수차례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효과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9. 10.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동 조례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이 모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하고,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일부를 보완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자제 사업장에서 실천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명령을 위한 사전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보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골자

- 가. 구청장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자와 음식점, 백화점, 목욕탕 등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 및 검사등에 관한 규정이 모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절차등을 보완정비함.
- 다. 음식점,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실천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하는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하여 사전에 의견진술 등 절차를 보완 정비함.

- 3. 개정근거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1999.2.8 법률 제5863호)
제15조, 제16조, 제34조 및 제42조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061호) 제12조, 제41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영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견진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때에는 적어도 의견진술일 10일전까지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구첨장은 과할</u> <u>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u> <u>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u> <u>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폐기물</u> <u>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u> <u>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u> <u>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p><u>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u> <u>사업자</u></p> <p><u>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u>일반폐기물배출자</u></p> <p><u>②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u> <u>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u> <u>하여야 한다.</u></p> <p><u>제7조(과태료 부과·징수등) ①구첨장은</u> <u>영 제41조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u> <u>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u> <u>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u> <u>서식의 과태료처분지서와 별지 제2호</u> <u>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u> <u>하여야 한다.</u></p> <p><u>②~③(생 략)</u></p>	<p>(삭 제)</p>
	<p><u>제7조(과태료 부과·징수등) ①구첨장은</u> <u>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u> <u>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u> <u>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영 제41조제2</u> <u>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u> <u>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u> <u>료처분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u> <u>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u> <u>한다.</u></p> <p><u>②~③(생 략)</u></p>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첨문) ①</u> 구청장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법 제15조 제5항 및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태료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u>②</u>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문에 대하여는 영 제39조의 첨문절차 규정에 따른다.</p>	<p><u>제8조(의견진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때에는 적어도 의견진술일 10일전까지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